

□ 動力資源部告示 (第82-33号)

- 石油事業基金을 助成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損失補填에 관한 告示 -

石油事業法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 第17의3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및 法 第17条의4 第3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基準을 石油事業法시행령(이하 “令”이라 한다) 第9条의 4및 第9条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告示한다.

1982年 8月 7日

動力資源部長官

1.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금액
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石油 1배럴당 美합중국통화 2.20\$(비축기금 1.50\$, 안정기금 0.7\$)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輸入石油製品중 벵커C油는 1 배럴당 5 \$(비축기금1.50\$, 안정기금 3.50\$)에 상기의 납부일의 換率을 승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2. 原油 및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손실보전기준

가. 原由導入先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 추가운송비,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

(1) 추가운송비의 지급기준

가) 原油導入先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石油精製業者가 해당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와의 차이를 令 제9조의 5제2항제 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른 매분기별로 산출보전하되 연말에 정산한다.

○손실보전기준 :

$$\frac{\text{다변화운임} \times \text{실지급일의 환율}}{\text{다변화도입물량}} - \frac{\text{中東운임} \times \text{실지급일의 환율}}{\text{中東지역도입물량}}$$

×1.0274×다변화도입물량

나)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.

○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산출기준 :

$$\frac{\text{최근년도의 실적치} \times \frac{\text{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} \times \text{평균운임요율 (AFRA)}}{\text{최근년도의 평균World Scale} \times \text{평균운임요율 (AFRA)}}}{\text{실적치}}$$

(2) 추가금융비의 지급기준

가)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石油精製業者가 해당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과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 추가부담을 令 제9조의5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매분기별로 산출 보전하되 연말에 정산한다.

○손실보전기준 :

유전스실지급이자×

$$\frac{\text{다변화원유도착기간} - \text{中東원유도착기간}}{\text{당해원유의 유전스사용일 (이자발생일기준)}}$$

나)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융비를 보전하고자 할 경우의 中東지역으로부터의 도착기간은 당해석유정제업자의 최근년도 실적치를 적용한다.

(3)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

原油도입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입 장려금은 도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입장려금은 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 安定基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收入金(현재 0.70\$/배럴)의 징수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(4) 原油도입선다변화 지원대상

이 고시에서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이라 함은 美洲 및 아프리카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수입장려금은 原油도입선다변화 대상 지역으로부터 정부, 국내석유정제업자 또는 민간상사가 產油國 정부 또는 산유국의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

나. 석유제품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

令 제9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

품의 수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의 기준은 수입석유제품 1배럴당 석유제품의 수입가격(운임·보험료 포함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)×선적일로부터 30일되는 날의 환율에서 국내 석유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告示는 1982년 8월 7일 이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.

2. 收入金の 징수대상이 되는 수입석유제품중 LPG 및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와 장기 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저유황병커C油(LSWR)에 대한 수입금은 차기 석유가격조정시까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3. 이 고시 시행이전에 통관된 石油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4. 동력자원부고시 제82-17호(82. 3. 23)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.

□ 動力資源部告示(第82-34号)

- 石油事業法시행령 第9条의4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の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요령 -

石油事業法시행령 第9条의4 第7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の 징수유예 및 환급요령을 同条 第9項의 規定에 의거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.

1982年 8月 7日

動力資源部長官

트 이하인 경우의 기준소요량을 1.04로 한다.

第3条 : 수출 미이행분에 대한 收入金の 징수

1条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石油에 대한 收入금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의 국환은행에 납부하되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한다.

(원유도입량 - 소요원유량) × 수입금 × 선적 후 30일째 되는날의 환율

第4条 : 收入金の 환급

收入금을 납부한 후 추가로 수출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환급하되 그 환급은 환급신청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.

추가소요원유량 × 수입금 × 선적 후 30일째 되는날의 환율

第5条 : 收入金の 적용기준

제3조 및 제4조의 收入금은 당해 原油 통관시점에서 적용되는 수입금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告示는 1982년 8월 7일 이후 통관되는 原油분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규정) 이 告示 시행이전에 도입된 수탁정제수출용 原油에 대하여 징수한 收入금은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4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告示 제4조에 의한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이 告示 시행 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.

第1条 : 收入金の 징수유예

습 제9조의4 제7항의 規定에 의하여 도입하는 原油(이하 "수탁정제수출용원유"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원유 선적 후 90일째 되는날까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(이하 "수입금"이라 한다)의 징수를 유예한다.

第2条 :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된 原油量의 산출

① 수탁정제수출용원유를 도입하는 자는 원유 도입계약서에 그 原油로부터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總取率(이하 "계약수율"이라 한다)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유된 原油量(이하 "소요원유량"이라 한다)의 산출방법은 수출석유제품량(단위: 배럴)에 기준 소요량을 승한 것으로하며 기준소요량은 100 / 계약수율로 한다. 다만, 계약수율이 96.15퍼센